

<p>서울특별시의회 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 중 "회의수당"을 "회기수당"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회의수당)을 제3조(회기수당)으로 하고,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회의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</p>	<p>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단,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조사·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3조제2항, 제3항의 "회의수당"을 각각 "회기수당"으로 한다.</p> <p>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 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,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,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,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, 별표 5 국내이전비지급표, 별표 6 국외이전비정액표,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.</p> <p>별표 1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지급액 월 500,000원을 월 700,000원으로, 보조활동비 월 100,000원을 월 20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별표 2의 "회의수당"을 각각 "회기수당"으로 하고, 회기수당 지급액 일 60,000원을 8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별표 3 비고 5의 "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"를 "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"로 하고, 별표 4 비고 1 "국외여비규정"을 "공무원여비규정"으로 하고, 별표 4 비고 1 "별표 2"를 "별표 4"로 하며, 비고 2 "국외여비규정 제22조"를 "공무원여비규정 제23조"로 하고, 비고 3 "국외여비규정"을 "공무원여비규정"으로 한다.</p>
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"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 관한 조례"를 "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"로 한다.</p> <p>②서울특별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"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</p>